

포이동에서 마주한 국가의 민낯과 정부의 대체복무제 계획

오경택 병역거부자,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반전평화모임 공동대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아침부터 찾아온 강남구청 공무원들. 그 뒤를 따라 먹구름처럼 몰려온 용역 깡패들. 그들이 건너온 양재천 다리과 개천 건너 보이던 반짝이는 타워팰리스를.

지금은 그 명성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타워팰리스가 '가장 비싸고 좋은 집'의 대명사였다. 바로 그 부자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포이동 재건 마을'이 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5길 32(옛 주소로는 포이동 266번지)에 위치한 이 마을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넝마주이'와 '부랑인' 등을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수용하면서 만들어졌고, 1990년대 말까지도 재개발로 밀려난 철거민, 가난한 상이용사 가정 등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강제로 이주한 곳이다.

2011년 6월 12일, 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가 초동 진화 실패로 마

을 96가구 중 75가구를 전소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강남구청과 서울시는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했는데, 허허벌판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한 마을 부지 때문이었다. 사람이 살던 집들이 불타 없어지고 폐허만 남자, 구청은 주민들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계고장이 나붙고 공무원들은 용역 강패와 함께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나는 마을에 머문 시간도 짧았고 성실하게 일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국가’를 대신한 공무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들이 데려온 강패에게 패대기쳐지는 주민들을 보고서 생각했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최소한 ‘양재천 건너’에서 있어야 안 되겠다고. 이후 주변의 동료들을 따라 학생운동에 가담했다. 끊임없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고자 했다. 밀양 송전탑,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세월호와 같은 투쟁에 연대했고 제주 4·3, 광주민중항쟁,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의 역사를 학습했다. 근래에는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나라의 군대는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다.

저 멀리 보이는 육지, 요동치는 배 위에서

대학을 졸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영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미루고 미루던 입영 거부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 사법 절차를 설명하자면, 입영 날짜를 어겨도 3일 이내에 훈련소로 찾아가면 ‘지연 입대’ 처

리를 받을 수 있다. 그 기한마저 넘기면 병무청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이전의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다. 나 또한 그와 같을 줄 알았다. 올해 5월에 시작된 재판이 6월 변론 종결을 거쳐 7월 17일 제헌절에 선고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창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8월 30일에는 공개 변론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뒤 6월 28일에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바깥세상에서의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던 나로서는 마냥 기쁘진 않았다.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돼 버려 걱정마저 들었다. 그렇다고 그냥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병역거부운동에 이 전과는 다른 국면이 열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선고 날이 다가왔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저 멀리 대체복무제라는 육지가 보이는데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할 듯 요동치는 처지일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란스러울지언정 무력하지는 않았다. 사법부에서 넘어온 변화의 단초가 ‘병역’라는 단단한 벽에 조그마한 균열을 냈으니, 법정투쟁을 열심히 하면 정과 망치가 되어 유의미한 싸움이 될 것도 같았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은 곧장 잡히지 않았다. 반면,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이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국가인권위,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 학계와 시민사회 진영을 아우르는 자문위원회가 구

성되었다. 두 기구가 중심이 되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활발히 논의했으나 결과물은 썩 훌륭하지 못하다. 11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체복무제 정부 안’의 내용이 “교정 시설 36개월 합숙 근무”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안을 둘러싼 논쟁들

위의 정부 안은 왜 문제인가? 크게 복무 기간과 업무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복무 기간을 살펴보자. 36개월이라는 기간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단축될 육군 현역 복무 기간 18개월에 2배수를 적용한 것이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논의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복무 형태의 기간을 모수로 삼는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위배된다. 유럽의회, 유럽인권재판소,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대체복무의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같거나 1.5배 미만이어야 하고 2배를 넘어가는 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과도하게 긴 복무 기간은 개인으로 하여금 양심상의 결정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는 곧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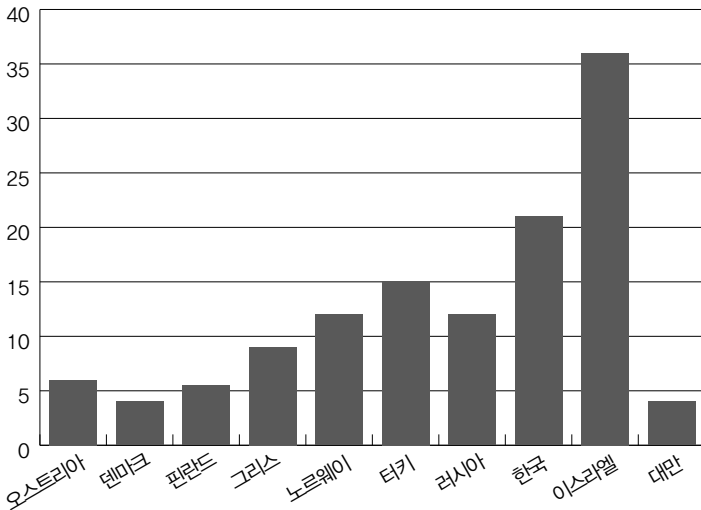
국방부의 안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2배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2017년에 유럽평의회가 발간한 『유럽사회헌장 2016 결정에 대한 정부 간위원회 보고서』는 “군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원회 또한 대체복무제의 추가적 기간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군복무 기간이 길수록 대체복무 기간과 군복무 기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

구분	현역병(a)	대체복무(b)	비율(b/a)
덴마크	4개월	4개월	1
에스토니아	8개월	8개월	1
독일(징)	9개월	9개월	1
오스트리아	6개월	9개월	1.5
스위스	260일	390일	1.5
러시아	12개월	18개월	1.5
벨라루스	18개월	27개월	1.5
대만(징)	4개월	6개월	1.5
그리스	9개월	15개월	1.7
프랑스(징)	10개월	20개월	2
핀란드	5.5개월	11.5개월	2.1

「중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2018년 10월 4일), 6쪽. *(징)*은 징병제 국가.

주요 국가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출처: ISS, The Military Balance 2017 통계. 대만의 경우 2018년 모병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신병은 훈련소에서 4개월 훈련으로 군복무를 마친다.

간에 차등을 두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군복무 기간이 긴 편에 속하며 그 집행도 매우 엄격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기간으로 설정한 국방부의 안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도,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복무 기관을 교정 기관으로 한정지은 것 또한 문제다. 지금까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은 많은 경우 복역 기간 동안 ‘소지’ 업무를 수행했다. ‘소지’란, 교도관을 도와 우편물 분류 및 전달, 식사 배분, 구매품 배달 등 교도소 내의 자잘한 업무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교도소 업무를 분담하고 철창 밖을 나와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지를 아무나 시켜 주지 않는다. 병역거부자와 같은 양심수처럼 ‘사고 치지 않을’ 재소자들이 주로 이 업무를 전담한다. 문제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주어질 업무가 소지 업무와 대동소이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즉, 이전의 병역거부자들이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 안에서 했던 일을 이제는 교도소 밖 병역거부자들이 3년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측면은 대체복무가 가져다줄 사회적 효용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대체복무제를 요구해 온 이들은 이 제도가 가져다줄 사회 공공성의 제고를 강조해 왔다. 군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던 이들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많은 시민이 대체복무자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대체복무자 수급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대체복무제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정 업무 보조는 이러한 선순환을 전혀 일으킬 수 없다.

두 번째 측면은 처벌 아닌 처벌로 인한 낙인이다. 병역거부자들이 실형 선고를 받고 했던 업무를 실형 선고 없이 하게 되는 이 상황은 “사법절차가 저질러 온 위헌적 처벌을 행정절차로 대체할 뿐”이다.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어느 교수의 말이다.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에서 임재성 변호사가 인용한 표현을 재인용하였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병역거부자는 ‘이러나저러나 감옥 주변에 머무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병역거부에 쫓겨져 온 낙인과 편견을 씻어 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다. 달리 말하면, 병역거부자들이 원래 하던 일을, 마침 속소도 마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대체복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근래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회에 다양성을 제고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정부의 안은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최대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마지막해 도입하는 대체복무제’가 되어 가고 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의 논리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같은 안을 내놓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는가? 지금까지는 위중한 안보 상황과 같은 냉전 논리가 주된 근거

였다. 이는 조악한 안보 논리에 조용하여 세력을 형성하는 극우정당, 보수 기독교 단체 등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여론을 호도하여 병역 거부자들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남과 북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휴전선 인근 감시초소들을 폭파하는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었다. 반대파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대체복무제가 충분히 길고 힘든 것이 아니라면 ‘대한의 아들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국방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대체복무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그 누구의 마음도 달래 주지 못한다. 이에 관해서는 2018년 10월에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권위 연구 용역은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병역 판정 대상자를 대면 조사한 결과다. 표를 보면 합숙을 전제로 한 대체복무의 경우, ‘육군 병사의 1.5배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 이른다.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도 38.8%나 된다. 반면, ‘육군 병사의 2배’는 16.4%로, ‘1.5배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의 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절반에 가까운 43.5%의 응답자가 “군복무에 비해 기본권 제약이 덜할 것이기 때문”이라 답했고, 28.2%가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꼽은 사람은 16.3%에 불과했다. 비교적 불가피한 군복무 조건인 합숙 근무가 양측에 동일하게 주어질 경우 대체복무 기간이 더 길어야 하는 이유는 군대 내 기본권 침해가 심하고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정

확히 말하면 그러하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사유는 대체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군대 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 군 내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업무 강도 조정 등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한국 군대의 오랜 책임 방기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군대 내 비리와 사건·사고에 관한 보도를 접해오지 않았던가. 다만 과학적 통계가 없는 탓에 ‘그럴 것이려니’ 짐작만 하고 있었을 뿐.

대체복무제 도입이 끝은 아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 “36개월 교정 시설 합숙 근무”가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접하고 ‘이제는 양심을 이유로 감옥으로 가지 않는다’라며 안도했던 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요량으로 시작한 항소지만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회적 논의는 ‘양심’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거나 국가주의에 호소하는 수준에 그친다. 대체복무제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수주의자들의 악다구니가 더욱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할 수 있는 것 없이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건 뭐가 문제겠냐’ 싶기도 하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뜻하진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체복무제의 쟁취는 역사적 진전이고 매우 큰 성과지만, 여러 해

외 사례에서 보듯 대체복무제 쟁취가 그 자체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설계되었어도, 한국이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대표적인 것으로, 무차별 대량 살상의 위험이 큰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2008년 오슬로 회의 협약에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주요 집속탄 생산국이 불참한 것을 들 수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완성하지 못한다. 새로운 권리의 쟁취는 언제나 새로운 싸움을 잉태하기에, 마주한 상황에 휘둘리거나 감상을 늘어놓기보다는 다음 투쟁을 준비하는 편이 생산적일 것이다.

나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들, 『시대』 구독자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우리의 눈은 늘 가까운 곳에 보이는 육지보다 저 수평선 너머에 닿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탄 배가 요동치는 것쯤은 개의치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시대